

이리남성여자중학교 생활 규정(개정본)

부장	교감	교장

제정 : 2003년 5월 1일

일부개정 : 2004년 6월 14일

일부개정 : 2006년 4월 17일

일부개정 : 2006년 6월 12일

일부개정 : 2009년 3월 28일

일부개정(인권조례) : 2014년 4월

일부개정: 2015년 9월 15일

일부개정 : 2020년 5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이리남성여자중학교 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생활 및 준법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칙 중동조 제1항 제4호·제7호 및 제8호 규정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제4조 【구성】 1.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 생활,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교육위원회는 본교 전 직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회장, 교감을 부회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학생부장)을 주무로 한다.

3. 회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를 대신한다.

제5조 【교직원의 의무】 본교 교직원은 생활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결정족수】 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생활교육위원회의】 생활교육위원회는 직원 조회 시 병행하며, 사안 발생 시 생활교육위원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생활선도위원회】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2. 생활선도위원회는 교감, 학생부장, 학생부 교사,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 학년 부장으로 하고, 학생부장을 주무로 한다.

3. 생활선도위원회는 생활교육위원장의 명을 받아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4. 생활선도위원회는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분쟁) 등을 심의하고 학생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사회봉사 이하에 해당하는 사안에 해당하는 사안은 학생부 교사들만의 생활소 선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제9조 【구성】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구성한다.

2. 전담기구 구성 위원은 학생부장, 학생부 교사,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때 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자학자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 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12조 【통신 이용】 1. 학생들은 교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개인 통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생들은 사전 허가되지 않은 개인용 통신기기 및 통신망을 이용해선 안 된다.

제13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3.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종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5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6조 【폭력 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가.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지역교육청)

나. 학생폭력신고/상담전화 080-321-1318(도교육청), 117

다. 경찰청 범죄 신고 112

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도우미 1388

마. 교육청이나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4. 폭력 피해 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5.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별교육이나 학교장이 지정하는 치료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이성 교제】

1.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싶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18조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특별활동부와 생활지도부 ('학생부', '인성지도부'란 명칭을 '학생생활안전부'라 함)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 교사,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

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9조 【용의사항】 1. 용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되 형편상 조정할 수 있다.

- 가.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 나. 복장에 부착물(명찰)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 다. 복장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말

- 가) 무채색의 단정한 디자인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에게 맞지 않는 디자인은 제한한다.

2) 신발

- 가) 학생용 구두와 운동화 허용
- 나) 다양한 교육 활동에 편안한 신발 착용 권장
- 다) 교실에 실내화 주머니를 둔다.
- 라) 등·하교 시를 제외하고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는다.

3) 치마

- 가) 교복 치마의 주름을 변형하거나 통을 줄이는 것은 금지함.
- 나) 치마의 길이는 무릎선 정도로 함

4) 머리

- 가) 머리의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머리카락이 어깨선에 닿을 경우는 단정하게 묶을 것.
- 나)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 권장. (염색이나 파마는 금지)

5) 기타

- 가) 허용되지 않은 장신구는 착용을 금지함. 명찰은 반드시 교내에서 패용할 것.
- 라.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마. 타인이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 바. 가을·겨울 복장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말 및 스타킹

- 가) 검정 스타킹이나 타이즈(불투명 검정 타이즈, 무늬 없는 검은색 레깅스)

2) 블라우스

- 가) 교복 정장 블라우스를 착용할 것.
- 나) 추울 경우 무채색의 폴라 티셔츠는 허용함.

3) 외투

- 가) 등·하교 시에 동복 위에 상의를 완전히 여닫을 수 있는, 단정한 디자인의 무채색 외투를 허용함.

- 사. 동·하,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 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1) 동 복 : 11월 1일 ~ 3월 31일
- 2) 하 복 : 5월 1일 ~ 9월 30일
- 3) 춘·추복 : 4월 1일 ~ 4월 30일, 10월 1일 ~ 10월 31일

제20조 【학급 도우미】 학급 내 봉사활동(도우미) 학생의 근무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 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2. 학급환경 정돈 및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때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 학급 내 봉사활동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5. 학급 내 봉사활동은 학급회장(실장, 반장, 급장), 부회장(부실장, 부반장, 부급장) 학생회장, 부회장, 지도부를 제외한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연속 1주 일간 봉사한다. 단, 학급 도우미의 제외 범위는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제21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 및 생활 안전부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담당 교사가 입장 지도를 요청 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 생활

제22조 【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 생활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또는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

라서 행동한다.

6. 교통 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3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학생회

제24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25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금지 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7조 【효력 정지】 학생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28조 【관장 사항】 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5.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
6.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상정할) 학생 인권, 복지, 생활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협의 및 의견 개진
8.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운영
9. 학교 규칙, 학교생활규정 등 개정 시 학생 의견 제출

제29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 【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2.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2인

제31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제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학습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6. 봉사부 : 학교 내의 봉사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7. 행사부 : 학교 내의 자치 행사에 관한 제반 사항
8. 홍보부 : 학교 내 학생 자치활동 홍보에 관한 제반 사항
9. 교육정보부 : 학교 내의 교육 정보에 관한 제반 사항

제32조 【직무 및 선출】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4.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회장과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 나. 회장과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 학생 조치(4, 6~9호)로 확정된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다.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5. 선거 규정
 - 가. 목적 :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학生活동을 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구성하며 학생 스스로 자율적인 선거를 시행한다.
 - 나. 선거권 : 본교 재학생
 - 다. 피선거권
 - 1) 근면 성실하며,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많은 학생
 - 2) 회장은 3학년, 부회장은 3학년 1명 2학년 1명.
 - 라. 선거 방법 : 직접 선거 (무기명 비밀 투표)
 - 마. 선거 관리 위원의 역할 : 전년도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하며 다음의 일을 한다.
 - 1) 투표와 관련한 각종 공고물 부착
 - 2) 후보자 등록 접수
 - 3) 공정한 선거 운동 관리
 - 4) 투표 시 선거인명부를 작성 선거인과 대조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 5) 투표가 끝난 후 개표와 집계를 한 후 최종 당선자를 교장 선생님께 보고 한다.
- 바. 투표 : 투표 날짜는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
- 1) 투표용지 :
- 가) 3학년 정 회장 : 적색
 - 나) 3학년 부 회장 : 황색
 - 다) 2학년 부 회장 : 녹색

학 생 회 장	기 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성 명					
	기 표					

- 2) 종이 투표용지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자 투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사. 당선인
- 1) 최다 득표자
 - 2)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
 - 3)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를 시행한다.
- 아. 자격 상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박탈 또는 무효로 한다.
- 1)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학생
 - 2) 폭력. 협박. 유언비어를 유포한 학생
 - 3)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학생
 - 4) 지도 선생님의 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학생
- 제33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조
 - 가.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기능
 -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 나.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다. 학생회장 개정에 대한 심의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나.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라.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위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4조 【운영위원회】

- 1.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2. 기능
 - 가.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나. 사업계획
 - 다.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라. 기타 중요한 의안

제35조 【회의】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한다.

제5장 학생생활지도

제36조 【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3. 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시행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7조 【교외 생활지도】 학부모(단체),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8조 【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은 금지되며 학업 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다.

제39조 【학생체벌】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40조 【체벌의 기준】 체벌 금지 기준에 따라 삭제

제41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6장 징계

제42조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먼저 고려한다.
2.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43조 【징계의 심의 및 의결】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 【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45조 【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 설명】 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고 인정될 때(학생의 보호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7~10일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 3회에 걸쳐 30일을 정지시킬 수 있다.
5. 권고 전학: 사안이 중대하고 더는 선도에 따르지 않으며 교육환경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48조 【징계의 방법】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부 및 진로상담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3. “특별교육 이수”는 시·도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4. 제45조 제1항 ~ 제3항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 사실은 학생선도 대장에 기록·관리 하며, 추수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5.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의 ‘학교 내의 봉사’와 ‘사회봉사’는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49조 【징계의 세부사항】 징계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가. 학교 환경 미화 작업

나. 교재·교구 정비

다.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2. 사회봉사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 이수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바.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5.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안이나 징계는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제50조 【심의 확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제41조(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 설명)에 근거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학교 교직원 회의에 부치어 확정할 수 있다.

제51조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2조 【징계 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는 시험 기간을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3조 【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담임교사 및 진로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4조 【징계 해제】 학교장은 징계 기간 만료 전이라도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 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생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과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추수 지도】

1. 퇴학 처분(고등학교)을 할 때는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로 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 교육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2.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재입학 할 수 있다.
3. 학생부의 부장 또는 해당 학년 상담교사는 징계 학생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상담을 하고 상담 누가 기록을 작성한다.

제56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가.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나.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다.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라. 출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마. 도박을 한 학생
 - 바.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사. 공과금을 유용한 학생
 - 아. 불량서적을 탐독한 학생
 - 자. 불량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 차.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카. 무단결석이 잦은 학생
 - 타. 일과 시간 중 교내를 무단이탈한 학생
 - 파. 수업 시간 중 수업 방해나 교사의 지시 불이행의 행동이 반복되는 학생
 - 하.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2. 사회봉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가. 위 1항 각호의 1을 재차 위반한 학생
 - 나. 수업을 거부한 학생
 - 다. 시험을 거부한 학생
 - 라. 불법 집회 또는 불량 모임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 마.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바.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사.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3. 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 가. 위 2항 각호의 1을 재차 위반한 학생
 - 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다.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 라. 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마.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바.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사.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아.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어지럽힌 학생
 - 자.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4. 56조 1, 2, 3항의 반복 되는 위반이나 징계에 불응 시는 이행될 때까지 출석정지를 3회에 걸쳐 30일을 정지시킬 수 있다. (사고결석)
 5. 권고 전학: 사안이 중대하고 더는 선도에 따르지 않으며 교육환경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6장 개정 방법

제57조 【개정 방법】 본 규정은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로 구성된 학교규칙재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및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